

2021년 2월 19일

각위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의 프레스 발표에 대하여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가 2021년 2월 1일자로 발표한 「특허 소송에 관한 알림」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 프레스 발표에는 「판결에 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된 제품 규격이 “12 μ m (두께) * 150 mm (폭) * 200 m (길이)”의 단층 세퍼레이터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당사의 「ZL200680046997.8 호 특허권」은 제품의 두께를 1 μ m 이상 50 μ m 이하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폭과 길이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관련 프레스 릴리스 · 알림】

「선전시 쉬란전자 유한공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18년 8월 20일)
<https://www.asahi-kasei.co.jp/asahi/jp/news/2018/el180820.html>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2020년 5월 11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x69-att/el200511_1.pdf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20년 2월 4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19/pdf/el200204_1.pdf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관한 당사 한국 특허의 유지 심결에 대하여」(2020년 12월 23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1yem-att/el201223_1.pdf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중심 판결에 대하여」(2021년 1월 29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26m0-att/el210129_1.pdf

이상